

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(의안번호 제121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	2010. 3. 23	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	2010. 3. 23	
다. 상정·의결일자 :	2010. 3. 31	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폐지이유

2009. 11. 28. 상위법령(농지법44조, 45조, 46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)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10- 호(2010. 1. 22 ~ 2010. 2. 10)
- 의견제출사항 : 없음

나. 관계법령 및 근거

- 농지법 (법률일부개정 제 9721호 2009.11.28시행)

다. 예산조치 :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009년 11월 28일 “농지법” 개정 시행으로 ‘농지관리위원회 설치’ 조항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,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○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